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25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종욱 · 김은혜 · 안철수
송언석 · 배준영 · 서천호
윤영석 · 윤한홍 · 조승환
김승수 · 엄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방부장관은 군사적 · 사회</u> <u>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u> <u>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u> <u>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 · 변</u> <u>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u> <u>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u> <u>한다.</u>
③ (생 략) ④ <u>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u> <u>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u> <u>·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u> <u>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u> <u>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u> <u>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u> <u>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u>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u> ----- ----- ----- ----- ----- ----- ----- -----
⑤ <u>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u> <u>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u> <u>·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u> <u>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u> <u>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⑥ ----- <u>제1항부터 제3항</u> <u>까지</u> ----- ----- ----- ----- ----- ----- -----